



즉시 배포용: 2019 년 4 월 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4 월 미성년자 음주를 막기 위한 단속 실시 발표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과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가 협조하여 주 전역에서 단속 실시. 뉴욕주 주류관리청(SLA) 조사관이 500 개 허가받은 사업체 방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서 4 월 한 달동안 주정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과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법집행기관과 함께 전주 범위에서 주류판매 허가증을 소유한 바, 레스토랑, 주류 판매점 및 식료품점 등에서 위조 신분증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소매상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 전역에 걸친 엄중 단속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뉴욕은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며 미성년자 음주 문제를 초래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성공적 노력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안전 이니셔티브는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고 위조 신분증의 구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주 전역의 엄중 단속 조치는 뉴욕주 주류관리청(SLA)과 뉴욕주 차량관리부(DMV)가 연중 시행하는 정규 미성년 단속과 더불어 실시됩니다. 2019 년 1 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차량관리부(DMV)가 2018 년 위조 신분증 소지 혐의로 892 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막는 일은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뉴욕주 차량관리부(DMV)와의 합동 단속은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체들 양쪽 모두를 단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뉴욕주 차량 관리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부국장 겸 주지사 직속 교통 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의 회장 대행인 Mark J.F. Schroed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위해 협조하는

모든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위조 신분증의 사용 및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인해 이들이 음주 운전을 한다면, 뉴욕의 젊은이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지난해 위조 신분증 압수 건수는 기록적인 숫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및 사법 기관의 파트너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젊은이들에게 이후에 약물 남용 문제로 발전할 큰 위험성을 포함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중요한 방지 노력으로, 젊은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해 그들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저희는 주지사 및 기타 주정부 기관과 이 문제를 비롯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돕는 기타 가치 있는 이니셔티브에 협조할 수 있어 기쁩니다."

21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주류 구매 의도로 가짜 신분증 혹은 위조문서를 사용할 경우 체포한 후, 그들의 운전 면허증을 최소 90 일에서 최대 1 년까지 정지시켰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주류관리청(SLA)에 적발된 기업은 위반 시마다 최대 10,000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게 되며, 재범자들은 주류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직원이나 면허 소지자는 체포되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LA)은 또한 미성년자 음주법을 적극적으로 계속 집행하며,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들과 그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 년, 주립 주류관리청 (SLA)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주류판매면허 소지 소매업체들에 1,090 건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주류 판매 허가권자와 관련 직원들이 이수한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Alcohol Training and Awareness Program, ATAP) 교육 건수는 2017 년 18,881 건에서 2018 년 23,139 건으로 20 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주 주류관리청(SLA)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타번 연합회(Empire State Restaurant and Tavern Association, ESRT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무료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ATAP) 훈련을 받는 400 명 이상의 사업체 소유주와 직원이 포함됩니다. 이번 가을 뉴욕주 주류관리청(SLA)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타번 연합회(ESRTA)는 미성년자 음주 방지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다시 한 번 주 전역에서 일련의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